

＜ 수 시 공 시 ＞

2012.10.29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발생일 설정잔액(원)	발생일 순자산총액(원)	기준가격
1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A형	1,343,527,949	1,332,118,042	991.51
2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C형	1,195,823,698	1,180,598,238	987.27
3	신영코리아밸류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2,760,042,324	2,773,424,353	1004.85
4	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9호(채권혼합)	2,323,235,486	2,406,471,647	1035.83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발생 일자 : 2012.10.27. ~ 2012.10.28.

4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